

직업교육콘텐츠연구센터 규정

2025. 09. 01. 최초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직업교육콘텐츠연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본 센터는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 내에 둔다.

제3조(업무) 본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AX/DX 활용 콘텐츠 개발
2. 직업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및 관리
2. 스마트 LMS의 운영 및 관리
3.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
4. 교수(강사 제외)의 교수-학습능력 개발 및 교수학습방법개선지원
5. 교수(강사 제외)의 수업개선 및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
6. 교수(강사 제외)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, 세미나, 워크숍 개최
7. 전체교직원 연수 운영 및 지원
8. 학생의 학습능력신장 및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학습코칭, 다양한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
9. 기초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지원
10. 기타 본 센터의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대내외적 사업의 계획과 실적 평가

제2장 조직

제4조(조직)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, 전담직원, 팀원을 둘 수 있으며, 센터 운영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직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

제5조(위원회) 본 센터의 전반적인 중요사항의 자문 및 평가는 직업교육혁신센터의 직업교육혁신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 및 검토한다.

1.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, 평가, 환류에 관한 사항
2. 학생 학습역량 강화프로그램에 관한 계획,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3. 센터 운영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4. 센터의 운영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

제4장 기타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운영된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